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0일, 장철민의원 등 13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9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4.16.) 상정, 축조심사, 의결
(원안의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4.23.) 상정, 소위심사
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장철민의원)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나 해저광구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난 5년간 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를 보면, 연평균 1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서면회의로 개최되어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원회가 실제적인 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늘리고 그 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환경·지질·재난안전 분야 등의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취권 설정허가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저광물자원 개발 과정에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4항제2호 및 15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분야 확대

개정안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대상 분야를 현행 해양, 해저광물자원 분야에서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4항제2호).

현행법 제2조의3¹⁾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해저광구의 설정, 해저조광권의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²⁾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①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저광구의 설정
 3.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有望鑛區)의 지정·공표 및 자금 지원
 4. 해저조광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연장 허가
 5.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6. 해저조광권의 취소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법 제2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2. 외교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해양수산부

이에 따라 현재 위원회는 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4인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사장, 지질자원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해양과학기술원 원장 등 5인, 그 외 민간위원 5인 등 총 15인으로 운영 중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위원]

구 분		소 속
위 원 장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정부위원 (4)		기획재정부 (국장)
		외교부 (국장)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해양수산부 (국장)
민간위원 (10)	기관위촉 (5)	한국석유공사 (사장)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민간위촉 (5)	연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한양대학교 교수
		해양대학교 교수
		단국대학교 교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총 17회 회의를 개최하여 연평균 약 1.1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개정안은 최근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서면회의로 개최되는 등 위원회가 심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위원회가 심의기능을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위촉 대상 전문분야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과 같이 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대상 분야를 현행 해양, 해저광물자원 분야에서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까지 확대하는 경우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해저광물자원 개발과정이 해양 생태계나 주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고려한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양은 해양환경을 포함하고 해저광물자원은 지질을 포함하는 등 전문분야 항목간 영역이 중복되고 불분명하여 전문가 구분의 실효성이 없고, 지질, 해양환경, 지진은 현재 기관위촉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채취권 설정 허가 추가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채취권 설정을 허가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해저조광권이란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며, 탐사권과 채취권으로 이루어짐³⁾.

현행법에 따르면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 설정의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저광물을 탐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에게 이를 허가함⁴⁾.

그리고 탐사권자가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해저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두 종류로 한다.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탐사권의 설정)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탐사권의 허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저광물을 탐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에게 이를 허가한다.

1. 탐사업무를 수행할 재력, 기술능력 및 보유(保有)장비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합리적으로 해저광물을 탐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설정허가를 받아야 하며⁵⁾,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취권 설정의 출원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이 탐사기간 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함⁶⁾.

현행법은 탐사권 설정의 허가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채취권 설정의 허가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지 여부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채취권 설정 허가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함으로써 해저광물자원의 개발과정이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4조(채취권의 설정) ① 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취권 설정을 원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해저광물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드는 경비의 결산서
3. 해저광물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이 탐사기간 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5조⁷⁾에 따르면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으로 구성되며, 제2조의3제1항제4호⁸⁾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해저조광권의 설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대상 분야를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까지 확대하고, 채취권 설정 허가 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

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두 종류로 한다.

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①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저광구의 설정
3.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有望鑛區)의 지정·공표 및 자금 지원
4. 해저조광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연장 허가
5.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6. 해저조광권의 취소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개정안 제15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채취권 설정 허가 관련 행정절차의 적용 시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율하기 위하여 적용례 추가와 같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4항제2호 중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을 “해양, 해양환경, 지질, 해저광물자원 및 재난안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출원인”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취권 설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탐사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14조제1항에 따라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④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해양 및 해저광물자원</u>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u>해양, 해양환경, 지질, 해저광물자원 및 재난안전</u> ----- -----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u>출원인</u> 이 탐사기간 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한다.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① ----- ----- <u>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인</u>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